

내면적 사실의 주장에 관한 반론권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1982 년 3 월 2 일 판결

8U 177/81

<적용법조>

헝겔주 언론법 제 7 조 및 제 10 조

<판결요지>

1. 가처분에 기한 정정보도문의 인쇄도 「주된 사건」을 해결하는 사건일 수 있다.
2. 관련된 자의 행동양식의 동기에 관한 진술은 단순한 추측의 표현이 아니라 내부적 사실에 관한 주장의 표현이다.
3. 엄격한 정정보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편협한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4. 피고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피고가 어떤 경우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이 제출된 때에는, 정정보도문중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법원이 삭제하여 버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개요>

1981 년 6 월 13 일자 「G.A.Z」지의 지방란에 『Unglaublich(도저히 믿을 수 없는)』라는 제하에 어떤 차고에의 진입로를 위해서 철거되어야 할 어떤 집의 철거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원고는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위 기사에는 그 원고에 관하여 (물론 이름은 특정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씌어있었다. 「즉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거주할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는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할시장에, 원고가 자진해서 이사를 해주면 1 만 마르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었다. 원고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원고가 이 제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 보여줄 조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극장이 당분간 불편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었다. 어떤 정치적인

소수집단이 어떤 계획에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원고에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원고는 1981년 6월 15일에 위 지방란에 대한 책임편집자인 제 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명한 정정보도문을 발송하였는 바, 위 책임편집인은 1981년 6월 16일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하였다. 원고가 보낸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G.A.Z 신문은 그 1981년 6월 13일자 판에서 나의 개인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에게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주거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속해서 그의 거주할 권리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옳지 아니하다. 나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나로부터 임차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거가 중요한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나는 도시의 시내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기하여 나는, 관할시장에게 보낸 나의 의견서에서 Westlange 46의 건물에 있는, 현재의 집에 대신하여 제공된 주거로 이사하라는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위 주거는 앞으로 건설될 차고진입로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소음, 해로운 물질 및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극심한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이외의 것은 나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도 G.A.Z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원고와 생각을 같이 하는 다른 친구들이 원고가 위 제안을 수락하였을 경우에 보여줄 조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극장이 당분간 불편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옳지 않은 것이다. 내가 나의 주거를 포기하는 댓가로 1만 마르크의 배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위 돈으로는 내가 살 주거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들과 상의해서 내린 것이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배상금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된 임대인인 나로서는 나의 임차인들에 대해서 계약상 그들의 방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1981년 6월 22일 결정으로 위 결정에서 상세히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위 신청중 위에서 다시 인용된 원래의 기사의 마지막 문장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만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간접강제에 의한 불이행시의 금전지급이 명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1981년 7월 4일에 위 정정보도문은 게재되어졌다. 그 후 즉시 원고는 본건 법적 분쟁은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해결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들-「G.A.Z」신문의 발행인 겸 책임 편집인인 편집국장임-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건 정정보도문은 오로지 의견의 진술 및 가치판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본건 법적 분쟁은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해결된 것으로 선언하고, 피고들에게 그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있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원고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지방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를 함으로써 이를 다투었다. 피고들은, 앞서 본 기사는 오로지 가치판단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 자신의 가치판단 및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실을 실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문의 범위도 역시 상당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문 게재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항소에 대하여는 그 대부분의 점에 있어서 이유 없다는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유>

위 항소는, 제 1 피고가 「G.A.Z」 신문의 책임 편집인이라는 성질상 정정보도문을 인쇄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범위에 있어서만 이유가 있어 인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당 법원은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문제로 되고있는 위 기사는 지금 판결해야 할 범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실상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적 주장은, 이러한 주장이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진실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바로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I

중요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이내 해결된 것으로 선언하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다툼이 있는 부분의 가액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이 허용된다. 이 사건 분쟁은 무엇보다도 어떤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피고들의 의무가 있는 지 없는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독일민사소송법 제 511 의 a 조의 의미에 있어서 비재산권적인 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BGH NJW 1963, 151; 1965, 1230, 1231 ; O LG Frankfurt NJW 1960, 2059 ;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Kap.28, Rdz.4S. 127f; Seitz/Schmidt/Schö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Rdz. 402S. 175f; Stein/jonas/Schum anm. ZPO,20, Aufl. 1979 § 1, Rdnr. 46; einschränkend dagegen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2. Aufl. 1979, Rdnr. 821S. 349) 이러한 소송목적물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진술하였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그리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의 액수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계속해서 취급되는 것이다.

II

1. 본안에 관해서 보면, 본건 항소는 아주 작은 한가지 점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즉 정정보도문의 게재에 대하여 제 1 피고에도 역시 의무가 존재한다고 지방법원이 판결한 점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이 이러한 의무는 단지 책임편집인이나 발행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보면 책임편집인은 제 2 피고이었으며,

반면편집국장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보면 헷센 주언론법 제 7 조 제 1 항 및 제 10 항에서 말하는 책임 편집인은 아닌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Bd. II 1968, Vorbem. §8, LPGRdnr. 18; Seltz/Schmidt/schöner Rdnr. 70, 89 ; Wenzel Rdnr. 8. 68)이러한 범위에 있어서는 본건 가처분의 신청이 처음부터 이유가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고, 본건 신청은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해결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범위에 있어서는 본건 항소가 제기된 판결은 변경되어야 하고, 가처분결정을 취소 하에 이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반하며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항소가 이유가 없다. 지방법원은 정당하게 가처분명령을 내렸으며 제 2 및 제 3 피고는 위 정정보도문을 정당하게 게재하였다. 원고가 위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직후에 본건 분쟁이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이미 해결된 것으로 선언한 것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잠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리고 현존하는 강제집행의 압력에 기하여 한 급부는 결코 이행이 아니며 따라서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거의 이의없이 주장되고 있다. (BGH NJW 1981, 2244 m.w. Hinw Baumbach/Lauterbach/Albers/Hartmann, ZPO. 40, Aufl. 1982, §91a Anm. 2 Ac, §708 Anm. 1B ; Stein/jonas/Leipold. a. a. O., § 91a Rdnr.,7)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처분에 기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도 역시 중요한 부분의 해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OLC Düsseldorf AfP 1976, 194; OLG Hamburg OLGZ, 1966, 295; Arch PR 1974, 110; 1976, 54; AfP 1977, 240mzust Anm. Romatka; AfP 1979, 403)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어떤 법적 근거에 기하여 종료의 선언을 강제당할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Stein/jonas/Münzberg, a. a. O., § 708, Rdnr.5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원고는 본안의 판결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적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선언할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이행은 어차피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는 그의 입장에서는 이행 즉 예를 들면 정정보도문의 새로운 게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있어서 그 법적 분쟁의 속행은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피고의 이익은 앞에서 본 바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여기에 있어서와 같이, 종료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및 그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고 해서 피고로부터 독일민사소송법 제 945 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종료의 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다.(OLG Frankfurt NJW 1971, 471 ; OLG Hamburg AfP 1973, 387 ; KG AfP 1977, 286 ; OLG Karlsruhe OLGZ 1979, 351, 352f : Seitz/Schmidt/Schöner, a. a. O., Rdz. 467S. 211) 앞에서 본 제 1 항에서 언급된 점을 제외한다면 원고의 종료의 선언은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원고에게는 이미 판결에서 명시된 범위에 있어서는 정정보도게재의 청구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정정보도문의 공표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한 현재 문제로 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였으며 제 2 피고 및 제 3 피고를 모두 연대채무자로서 피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조치 역시 정당하였다(Bay ObLG NJW 1970, 1927). 나아가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있어서는 주거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는 그의 거주권을 고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장을 사실적 주장(§10 Abs.1 S.1 HPG)이라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이미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운 주거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된 진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도 역시(마지막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외부적인 사정과 관련이 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동기도 역지사실로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론이 없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Bay ObLGZ 1953, 55, 58; Bay ObLG NJW 1970, 1927, 1928f.; KG NJW 1970, 2029, 2031; Löffler/Ricker, a.a.O., Kap. 25, Rz. 10, S. 117; Mertens in Münchener Kommentar, 1980, §824, Rdnr. 10; Seitz/Schmidt/Schöner, Rdz. 185 S. 93ff; Wenzel, a.a.O., Rz. 1. 32, S. 16). 위 진술은 명백한 추측, 따라서 단순한 의견의 주장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술은 항소와는 반대로 객관적인 진실과 아울러 원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분노에 직면하여서도 「원고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다」고 하는 문장도 역시 지방법원은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 이유는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그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는 배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원고의 행위의 동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만약 원고와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의 직접적인 강제에 의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주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사는 원고가 그의 친구들의 「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집을 비워주면 1만 마르크를 배상하겠다고 하는 시당국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기사는 원고의 정치적인 친구들이 원고가 위 배상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단순한 추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정정보도의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그의 행동양식에 따라서 당해 시당국에 대하여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부적인 사실도 주장될 수 있고 또한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진술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행동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주장되고 있는 한 위와 같은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진술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본다면(BGH, NJW 1978, 751; KG NJW 1970, 2029, 2031; OLG München OLGZ 1973, 458, 459; OLG Nürnberg OLGZ 1981, 118, 119; Löffler/Richter, Kap. 25, Rz. 11. S. 117; Mertens in Münchener Kommentar §824 BGB Rdnr. 9, 12; Seitz/Schmidt/Schöner Rdz. 169 S. 82f), 피고들이 본건에서 널리 퍼뜨린 기사는(제 3자의 동기에 관한 진술에서와 같이) 단순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따라서 사실의

주장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고의 행위의 동기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기사가 전혀 사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원고는 원고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할 것인가(KG NJW 1970, 2029, 2031; OLG Hamburg MDR 1966, 594) 또는 의견의 진술이라고 인정할 것인가(OLG Frankfurt NJW 1971, 471, 472; OLG Köln AfP 1972, 231; OLG Karlsruhe AfP 1981, 363, 364)에 관하여 판례에 가끔 나타난 문제들은 본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국 본건에 있어서 헛센주 언론법 제 10 조 제 1 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사실적 주장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헛센주 언론법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임의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에 관련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의 진술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의 정정보도문이 좀더 짧게 작성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간결한 표현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협한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OLG Hamburg NJW 1968, 1337; AfP 1979, 403)

3. 정정보도문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다툼이 없다. 정정보도문은 사실적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고(§10, Abs. 2 S.4 HPG) 그리하여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명목상의 동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반대하여 원고의 의견에 따른 그의 실제적인 동기를 진술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가 가치판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로서 앞서 본 피고들의 신문에서의 주장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정정보도문은 위 첫번째의 기사가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는 왜 원고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가를 진술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을 이와 같이 이해하여야 하는 까닭은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공중이 일방으로부터만 정보를 제공받는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또한 바로 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대치적 장치의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반공중에 있어서는 관계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리고 명료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너무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중이나 관계인이 충분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본건에 있어서의 정정보도청구는 1981년 6월 22 일자의 가처분결정의 대상으로 된 범위 내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III

그러나 정정보도문이 가치판단이 되지 않도록 지방법원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된 정정보도문을 줄여서 게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들 스스로는 그 정정보도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10, Abs3 S.1 HPG), 그리하여 피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추려내어서도 아니되는 것이고, 원고가 적식의 원고를 제출할 때까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통째로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OLG Celle NJW 1953, 1767; OLG München NJW 1954, 927 und AfP 1972, 278, 281; OLG Hamburg AfP 1977, 247, 249; OLG Frankfurt AfP 1979, 359, 360; 360, 361) 그리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처분법원도 역시 정정보도문을 스스로 축소할 수 없으며 또한 축소할 권한이 없는 가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정정보도문의 일부분만의 인쇄를 명하는 부담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OLG München: a.a.O.; OLG Düsseldorf AfP 1976, 194, 195; Seitz/Schmidt/schöner Rdz. 163 S. 71). 여기에서 피고들의 행동으로부터 미루어 보면, 피고들은 정정보도문을 인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지방법원이 변론기일 (§937 Abs. 2 ZPO)을 열어서 정정보도문의 일부를 인쇄에 대한 법원의 의견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스스로는 응하지 않았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OLG Frankfurt NJW 1971, 471, 472f und AfP 1980, 255, 257; Seitz/schmidt/schooner Rdz. 410-416 S. 180ff 참조). 그리하여 지방법원의 절차에 설사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 가처분결정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인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